

정 책 과 제 도

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*

◆ 개정이유

- 최저임금 심의·의결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심의과정과 의결 이유를 명시토록 하며,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성격과 대상이 유사한 단기근속 연소근로자, 양성훈련생 및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◆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소득분배율, 경제성장률,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.
- 종전에는 18세 미만 취업기간 6개월 미경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근로자 및 양성훈련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으로 일괄하여 규정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심의과정 및 의결이유 등을 명시토록 함.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부터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안 의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.

* 보도자료 「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」, 2003. 11, 노동부 참조.

◆ 개정내용

- 제4조 제1항 중 “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”를 “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, 경제성장률,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·직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”로 함.
- 제5조 제2항 중 “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”를 “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”로 함.
- 제7조 제2호 “수습사용중에 있는 자” 및 동조 제3호 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”를 삭제
- 제8조 제2항 중 “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최저임금안을 심의과정 및 의결이유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함.
- 제17조 제4항 중 “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”을 “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 3회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함.

<표 1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. ② (생략)	제4조 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-----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, 경제성장률,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필요한 경우 사업·직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 (최저임금액) ① (생략) 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5조 (최저임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최저임금의 적용 제외)

1.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
2.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
3.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
4.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 (최저임금의 적용 제외)

1. (현행과 같음)
2. < 삭제 >
3. < 삭제 >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 (최저임금의 결정)

- ① (생략)
-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~⑤ (생략)

제8조 (최저임금의 결정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최저임금안에 심의과정 및 의결이유 등을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~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 (회의)

- ①~③ (생략)
-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 (회의)

- ①~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
-----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3회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-----
